

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·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1126
------	------

2023. 9. 15.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8월 14일, 최기찬 의원 외 29명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1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】

-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3.9.11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수정안 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최기찬 의원)

1. 제안이유

- 해당 조례는 서울시 전통문화 보존 전반을 규정하고 있어, 전통사찰 보존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사항, 전통사찰 보전위원회 구성의 상세한 규정 등 전통사찰 지원에 대한 전문성이 미비한 실정임.

- 이에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전통사찰 부분을 삭제하고, 별도의 전통사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전통사찰 지원에 대한 위임 근거인 「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부분을 삭제함(안 제1조).
- 나. 전통문화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제1항).
- 다. 전통사찰의 예산지원 근거 규정을 삭제함(안 제5조제2호의 삭제).
- 라. 전통사찰보존위원회 부분을 삭제함(안 제9조의 삭제).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- 개정안은 「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 내 규정된 ‘전통사찰’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.
- 이에 따라 전통사찰의 정의 규정, 전통사찰 예산지원 근거 규정, 전통사찰 보존위원회 규정이 별도 조례에 반영되므로 조례 정비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다만, 지금까지 서울시가 동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해온 사업들은 대부분 불교문화와 전통사찰을 지원하는 것으로, 전통사찰 관련 조례가 별도 제정되면 동 조례의 실질적 역할이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음.

< 2023년 동 조례를 근거로 한 사업 현황 >

연번	사업명	예산	지원 근거
1	불교박람회 등 불교행사 개최 지원	270백만원	제5조(전통문화 보존·관리·육성 및 지원대상)
2	전통사찰 시설확충 및 정비지원	4,330백만원	제5조(전통문화 보존·관리·육성 및 지원대상)
3	진관사 국행수륙재 지원	100백만원	제5조(전통문화 보존·관리·육성 및 지원대상)
4	태고종 영산재 지원	100백만원	제5조(전통문화 보존·관리·육성 및 지원대상)
5	템플스테이 지원	520백만원	제6조(관광자원화 개발지원)
6	한국전통 불교문화 프로그램 지원	1,508백만원	제6조(관광자원화 개발지원)
7	연등회 행사지원	1,150백만원	제6조(관광자원화 개발지원)

- 또한, 동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적이 없어 전통문화의 보존·관리 및 육성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음.
- 최근 「전통문화산업 진흥법」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. 따라서 법체계와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전통문화의 정의 규정을 관련 법령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드림.

< 수정의견 >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전통문화”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예술	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“전통문화”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무용·음악·미술·건축·음식·의상·공예·무예 등 우리 민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전통문화”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<p>· <u>전통문화양식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.</u></p> <p>2. <u>“전통사찰”이란 「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사찰을 말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<u>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1. <u>전통예술: 전통무용, 전통음악, 전통미술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</u></p> <p>2. <u>전통생활양식: 한복 등 의생활, 식생활, 주생활, 한지, 전통놀이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실생활과 관련된 것</u></p> <p>3. (개정안과 같음)</p>
--	---	--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(재적위원 9명, 참석위원 8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)

V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·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126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3년 9월 11일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「전통문화산업 진흥법」이 2024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바, 해당 법령에 맞추어 정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- 정의 규정은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여 법률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할 용어가 여러 개일 경우 각 호로 나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비함.

2. 수정주요내용

가. 정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추어 규정함(안 제2조).

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·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·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전통문화”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전통예술: 전통무용, 전통음악, 전통미술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
2. 전통생활양식: 한복 등 의생활, 식생활, 주생활, 한지, 전통놀이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실생활과 관련된 것
3.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 관련 분야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< 수정안조문대비표 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전통문화”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예술·전통문화양식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.</p> <p>2. “전통사찰”이란 「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사찰을 말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“전통문화”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무용·음악·미술·건축·음식·의상·공예·무예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전통문화”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1. 전통예술: 전통무용, 전통음악, 전통미술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</p> <p>2. 전통생활양식: 한복 등 의생활, 식생활, 주생활, 한지, 전통놀이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실생활과 관련된 것</p> <p>3.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·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·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전통문화”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전통예술: 전통무용, 전통음악, 전통미술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
2. 전통생활양식: 한복 등 의생활, 식생활, 주거생활, 한지, 전통놀이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실생활과 관련된 것
3.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 관련 분야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신·구조문대비표 >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<u>전통문화</u>”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<u>전통문화예술·전통문화양식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.</u></p> <p>2. “<u>전통사찰</u>”이란 「<u>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4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사찰을 말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<u>전통문화</u>”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1. <u>전통예술: 전통무용, 전통음악, 전통미술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</u></p> <p>2. <u>전통생활양식: 한복 등 의생활, 식생활, 주생활, 한지, 전통놀이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실생활과 관련된 것</u></p> <p>3. (개정안과 같음)</p>